Chapter 1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온라인 신청 개요

난임부부시술비지원

01 서비스 신청관련 주요사항

온라인 신청대상정보

시술대상자만 서비스 신청이가능

* 배우자동의를 거쳐야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비스 신청하여 접수 중 일 경우,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사실혼 관계

주민등록등본상에 1년이상 동거를 하였을 경우 인정합니다.

분리세대의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록 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동의

신청인이 부모님, 시부모님의 피보험자로 등록이 된 경우 개인정보 동의서 첨부파일 등록 필요

증빙서류

진단서

* 최초 1회시 진단서 첨부 필수 사항

맞벌이부부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현재근무사실증명서류, 휴직증명서

개인정보동의서

복지부 사이트를 통하여 다운로드

* 서비스 신청내역 알려드립니다를통하여 다운로드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분리세대의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급여명세서

휴직자의경우 건강보험료 확인 시 불가할 경우 급여명세서 첨부파일로 추가함.

난임부부시술비지원

02 서비스 이용절차[1/3]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을 통한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 배우자동의 | 지원결정통지서

서비스안내



[1단계] 신청자정보



[2단계] 서비스신청



02 서비스 이용절차[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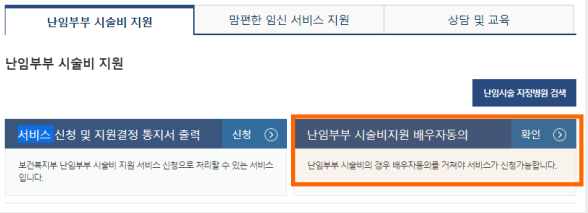
배우자동의 시 해당서비스가 신청이 되며,신청내역은 10분 단위로 처리됩니다.

서비스신청 | **배우자동의** | 지원결정통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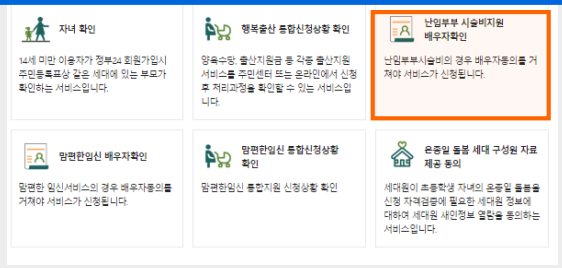
배우자동의 신청경로

- 서비스안내 및 사실/진위를 통한 배우자동의

서비스 안내를 통한 배우자동의



서비스 > 사실/진위를 통한 배우자동의



배우자인증화면



- 서비스 신청 시 등록한 배우자정보와 일치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인이 로그인 이 로그아웃 후 배우자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에대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배우자동의



02 서비스 이용절차[3/3]

처리기관(보건소) 처리완료 시 지원결정통지서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신청 | 배우자동의 | **지원결정통지서**

서비스안내

맞춤형 서비스

원스톱 서비스 | 생애주기별 서비스 | 꾸러미 서비스

맘(MOM)편한 임신 | 행복출산 | 온종일 돌봄 | 전입신고+ | 안심상속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맘편한 임신 서비스 지원 | 상담 및 교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비스 신청 및 지원결정 통지서 출력 신청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비스 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배우자동의 확인

난임부부 시술비의 경우 배우자동의를 거쳐야 서비스가 신청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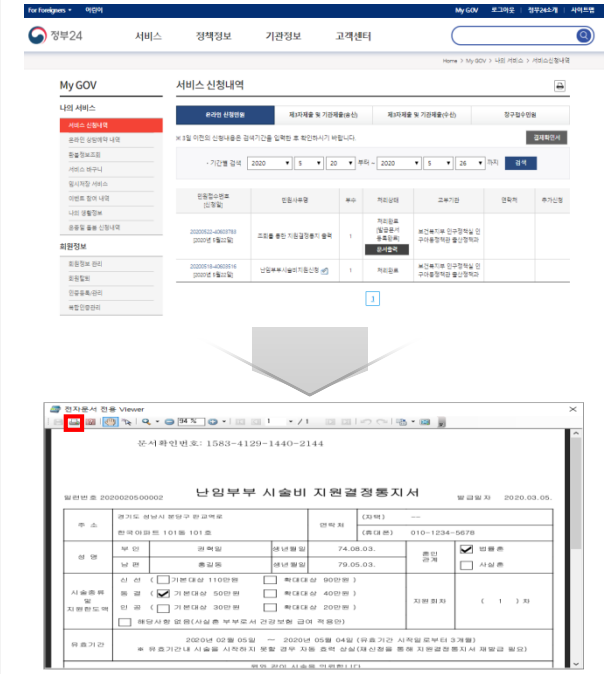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을 위한 온라인 신청을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안내

중앙난임 우울증 상담센터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가기

지원결정통지서 요청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Chapter 2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온라인 신청 절차

[서비스신청, 배우자동의, 지원결정통지서출력등을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처리 단계

- 서비스안내
- 서비스신청
- 배우자동의
- 지원결정통지서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서비스 안내

맞춤형 서비스

원스톱 서비스 | 생애주기별 서비스 | 꾸러미 서비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맘편한 임신 서비스 지원 | 상담 및 교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3 난임시술 지정병원 검색

1 서비스 신청 및 지원결정 통지서 출력 신청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비스 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2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배우자동의 확인
난임부부 시술비의 경우 배우자동의를 거쳐야 서비스가 신청가능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을 위한 온라인 신청을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안내

중앙난임 우울증 상담센터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가기

서비스안내 주요사항

① 서비스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신청 및 처리결과 완료 후 조회를 통하여 지원결정통지서를 출력 수 있습니다.

② 배우자동의

- 시술대상자가 신청 후 배우자동의를 거쳐야 사회보장정보원(PHIS) 신청이 됩니다.
- 배우자가 동의 완료 시 10분단위로 전송이 됩니다.

③ 난임시술 지정병원 검색

- 선택 시 팝업으로 지역별로 해당병원에 대한 위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시술비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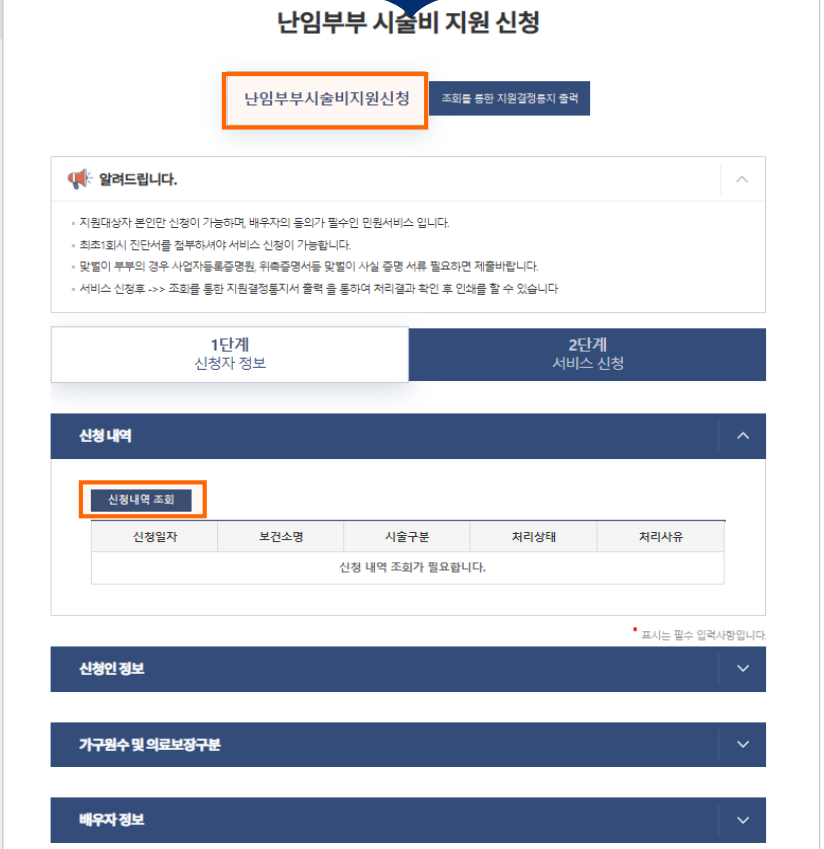
02 서비스신청[1/7]-신청내역조회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한 서비스 신청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처리 단계

- 서비스안내
- 서비스신청
- [1단계]신청자정보
 - 신청내역조회
 - 신청인정보
 - 가구원수 및 의료보장
 - 배우자정보
- [2단계]서비스신청
- 배우자동의
- 지원결정통지서

신청내역조회



주요설명

신청처리내역 조회

- 신청내역조회를 통하여 처리상태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중복신청 방지)
- 최초 신청 시 진단서 첨부 필수사항입니다.
- 신청내역조회 버튼 선택 시 실시간으로 신청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02 서비스신청[2/7]-신청인정보등

[신청인정보 및 가구원수 등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서비스 처리 단계

- 서비스안내
- 서비스신청
- [1단계]신청자정보
 - 신청내역조회
 - 신청인정보
 - 가구원수 및 의료보장
 - 배우자정보
- [2단계]서비스신청
- 배우자동의
- 지원결정통지서

신청인정보 입력



휴대전화 필수사항으로 입력이 필요하며,
주민등록 등본상의 주소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수 및 의료보장구분 조회



의료보장구분의 경우 행공센 연계를 통하여 조회하고 있습니다.

난임부부시술비지원

02 서비스신청[3/7]-배우자정보

배우자정보의 경우 신청 후 배우자동의 화면에서 일치 여부 확인합니다.

서비스 처리 단계

- 서비스안내
- 서비스신청
- [1단계]신청자정보
 - 신청내역조회
 - 신청인정보
 - 가구원수 및 의료보장
 - 배우자정보
- [2단계]서비스신청
- 배우자동의
- 지원결정통지서

배우자 정보



주요설명

혼인관계 정보

-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사실혼 관계도** 신청이 가능,
- 단, 주민등록상의 1년이상 동거 여부 확인 시

동거여부

- 분리세대의경우 주소가 다르므로, 배우자의주소가 다를 수 있음.

기타사항

- 난임 부부 시술비지원의경우 배우자동의가 필수사항이므로 정확하게 기재가 필요함.
- 다음단계를 눌러 2단계 서비스 신청단계로 이동한다.

난임부부시술비지원

02 서비스신청[4/7]-보건소 및 시술유형선택

보건소 및 시술비지원유형을 선택 하여야 합니다.

서비스 처리 단계

- 서비스안내
- 서비스신청
- [1단계]신청자정보
- [2단계]서비스신청
 - 보건소선택
 - 시술비지원신청
 - 구비서류
 - 정보동의(신청완료)
- 배우자동의
- 지원결정통지서

보건소 선택



보건소 선택의 경우 신청인의 주소를 기준으로 보건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술비 지원 신청



시술구분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02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서비스신청[5/7]

민원인의경우 유형별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서비스 처리 단계

서비스안내

서비스신청

[1단계]신청자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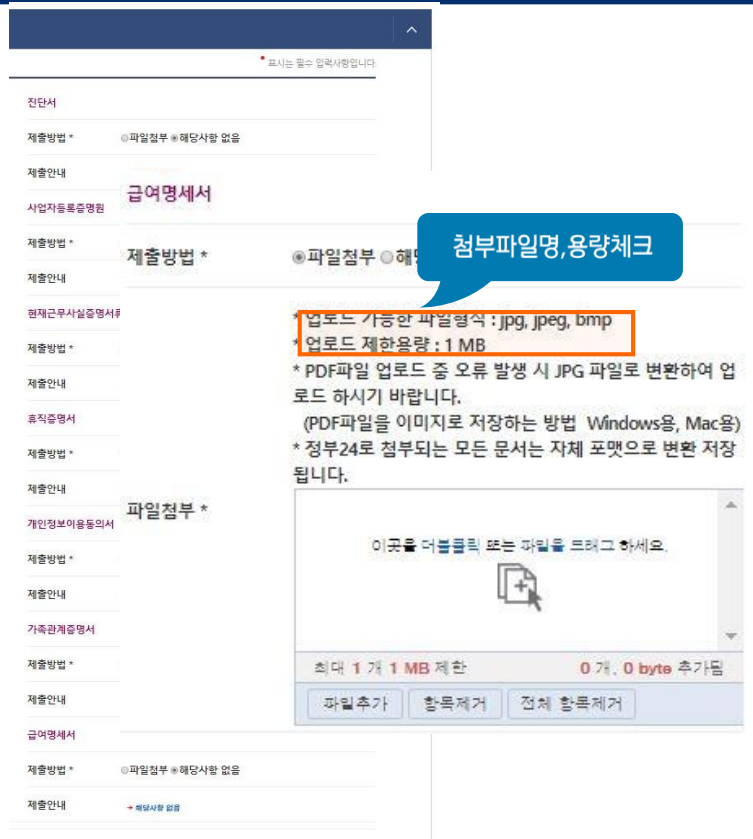
[2단계]서비스신청

보건소선택
시술비지원신청
구비서류
정보동의(신청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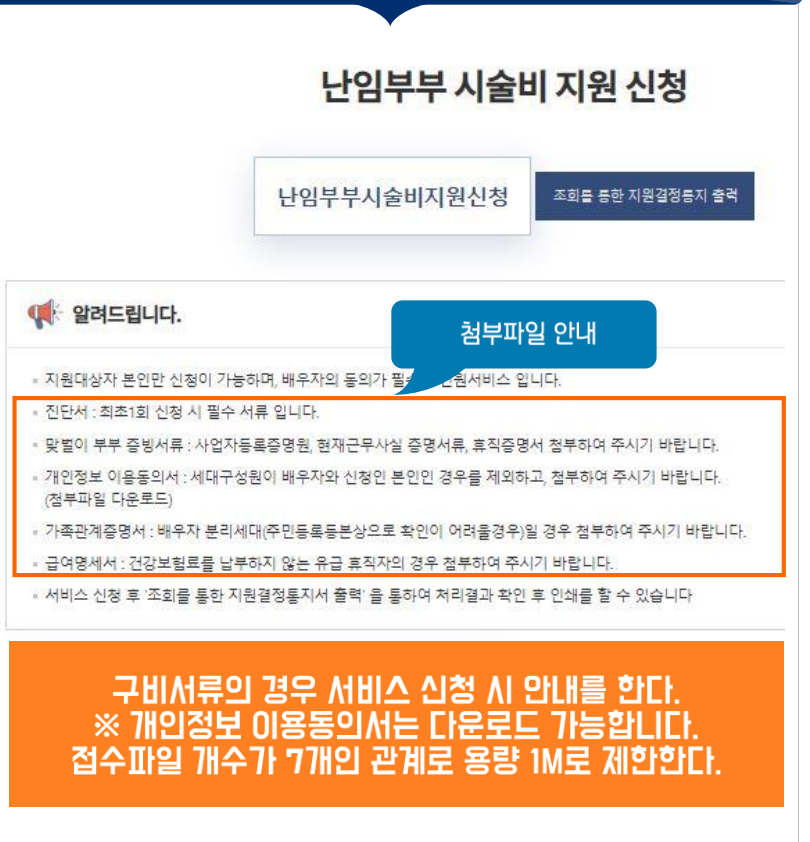
배우자동의

지원결정통지서

구비서류



구비서류 설명



구비서류의 경우 서비스 신청 시 안내를 한다.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는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접수파일 개수가 7개인 관계로 용량 1M로 제한한다.

02 서비스신청[6/7]-정보동의

정보동의 후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서비스 신청을 합니다.

서비스 처리 단계

- 서비스안내
- 서비스신청
- [1단계]신청자정보
- [2단계]서비스신청
 - 보건소선택
 - 시술비지원신청
 - 구비서류
 - 정보동의(신청완료)
- 배우자동의
- 지원결정통지서

개인정보 동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전체동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사전동의

-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 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항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개인정보 제공동의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보건복지부 및 해당기관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 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및 사업 : 보건복지부, 전국보건소, 사회보장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난임부부 지원사업, 난임부부 지원사업통계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위탁한 기관

○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자 선정 및 관리

행공센 사전동의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보건복지부 및 해당기관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 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및 사업 : 보건복지부, 전국보건소, 사회보장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난임부부 지원사업, 난임부부 지원사업통계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위탁한 기관

○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자 선정 및 관리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시술신청, 지원현황조사 또는 확인 시 활용
난임부부지원사업 통계자료 수집,분석, 결과 추출 및 정책 기초연구 자료로 활용
난임부부지원사업이 타 지원사업과 연계될 경우 활용

1.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보건복지부 및 보건소 (영구)
2. 개인정보 조회 열람 · 활용 · 동의내용

항목	이용목적
주민등록등(초)본 조회·열람	세대원수, 출생여부 확인

■ 난임 시술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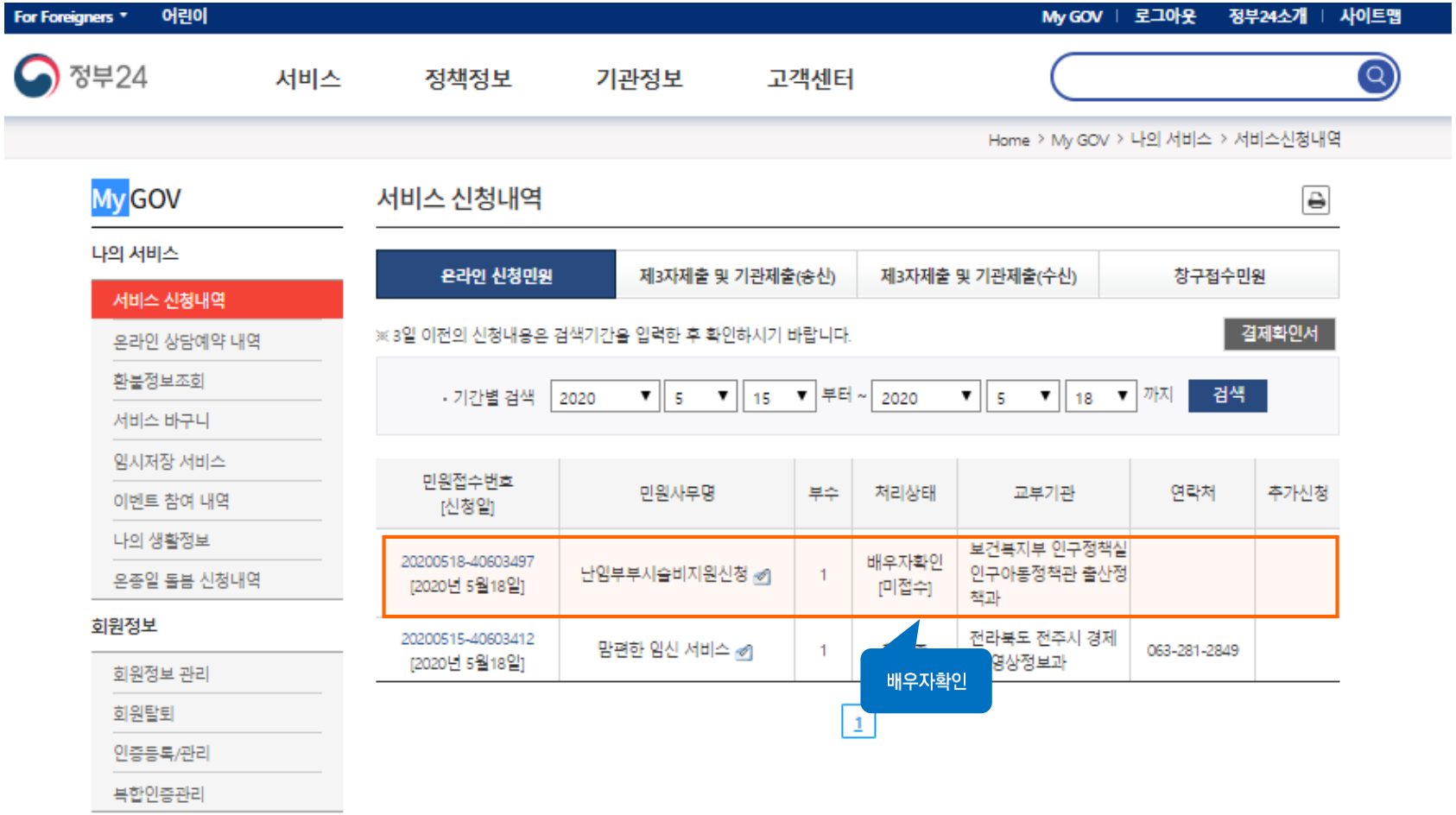
* 구비서류 제출 방법이 '우편/팩스/방문'인 경우 신청 후 3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민원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서비스신청

이전단계 | 신청하기 | 취소

02 서비스 신청[7/7]

서비스 신청 후 신청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시술비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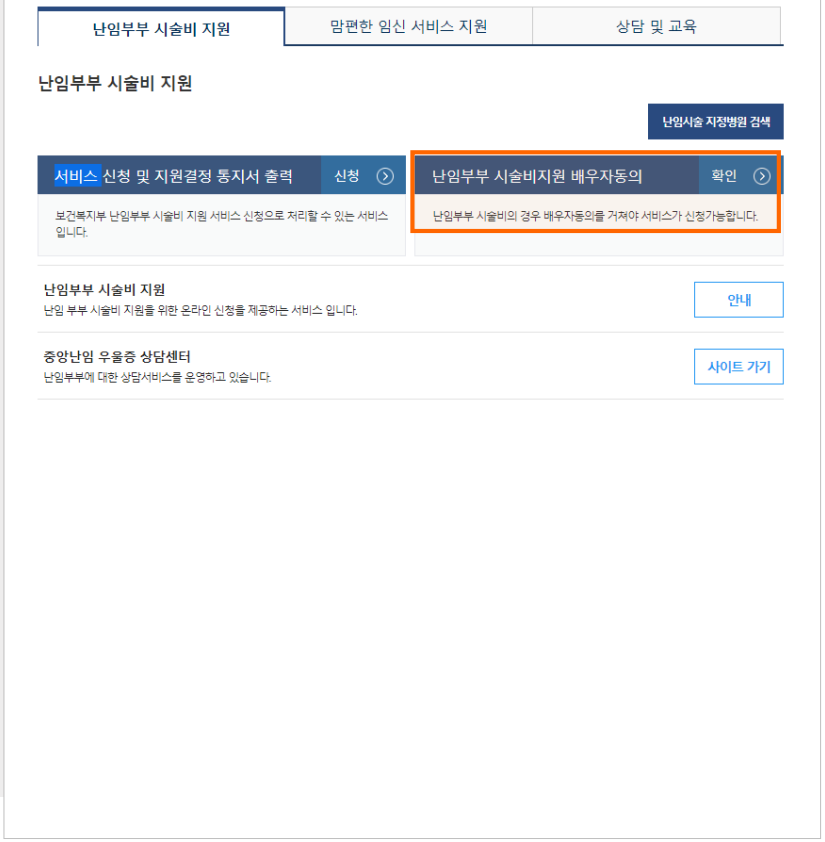
03 배우자동의 처리 [1/3]

배우자동의 2가지 방법으로 화면으로 이동할수 있습니다.

서비스 처리 단계

- 서비스안내
- 서비스신청
- 배우자동의
 - 배우자동의화면
 - 배우자인증
 - 목록조회
 - 배우자동의(완료)
- 지원결정통지서

서비스 안내를 통한 배우자동의



사실/진위를 통한 배우자동의



난임부부시술비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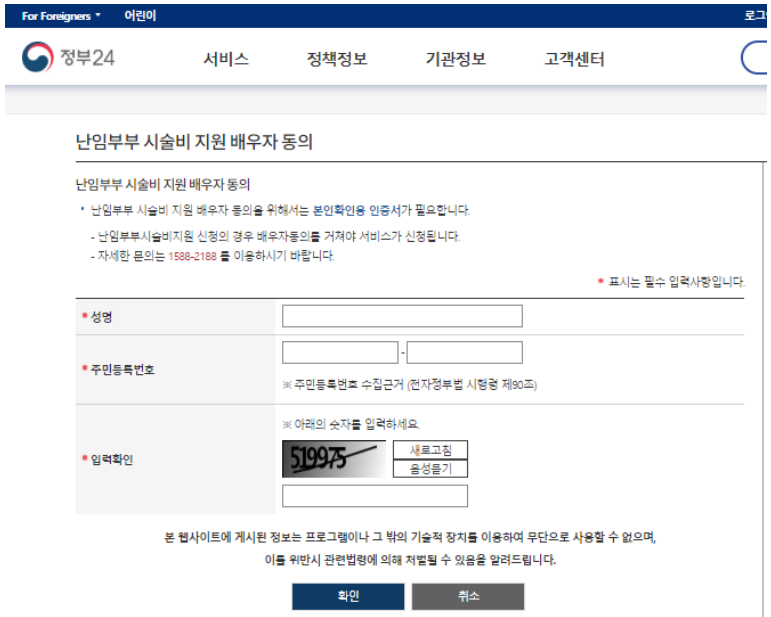
03 배우자동의 처리 [2/3]

배우자인증과정을 거쳐 배우자동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처리 단계

- 서비스안내
- 서비스신청
- 배우자동의
 - 배우자동의화면
 - 배우자인증
 - 목록조회
 - 배우자동의(완료)
- 지원결정통지서

배우자 인증



배우자동의 시 신청이 로그아웃 필요하며,
신청시 입력한 배우자정보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목록조회



본인확인여부 미동의 상태이며,
상세 확인을 통하여 배우자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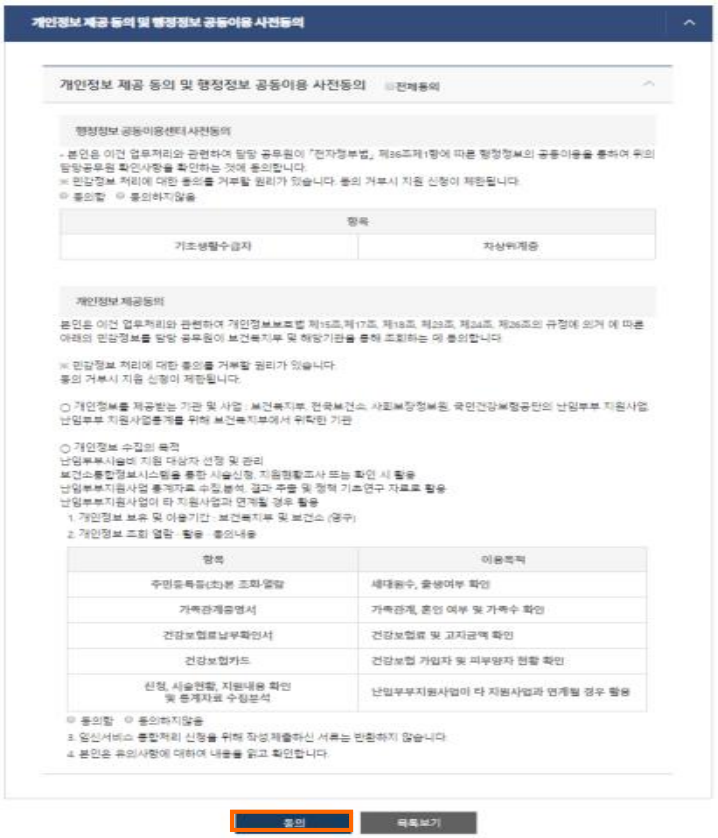
03 배우자동의 처리 [3/3]

배우자동의 버튼 확인 시 서비스신청이 완료됩니다.

서비스 처리 단계

- 서비스안내
- 서비스신청
- 배우자동의
 - 배우자동의화면
 - 배우자인증
 - 목록조회
 - 배우자동의(완료)
- 지원결정통지서

배우자동의



설명

배우자동의

- 시술대상자가 신청한 정보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동의 버튼 확인시 서비스 신청이 처리 됩니다.

서비스 신청관련사항

- 10분단위로 배우자동의 목록 확인 후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신청내역을 전송합니다.
- 따라서, 해당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난임부부시술비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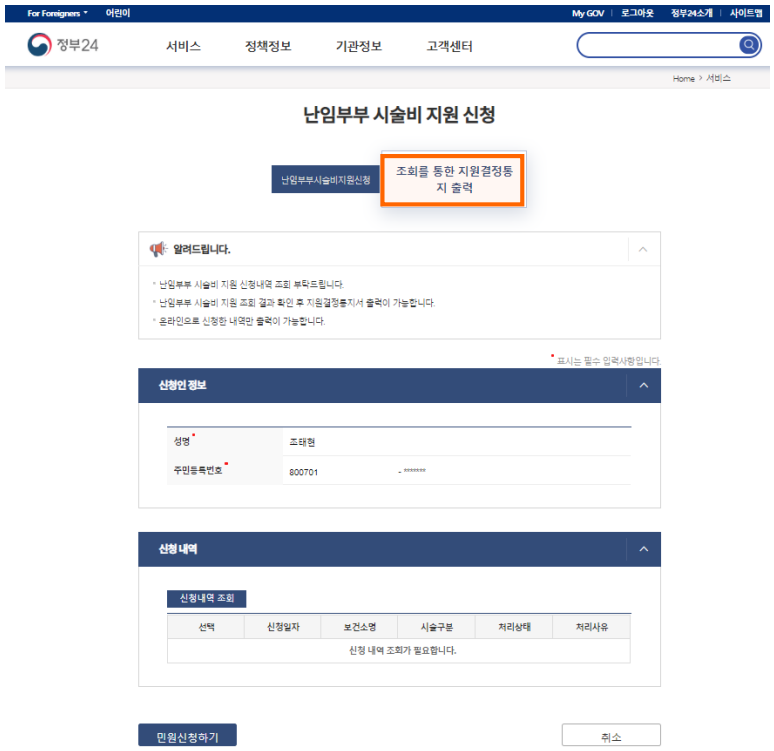
04 지원결정통지서 출력[1/2]

신청내역 조회를 통하여 지원결정통지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처리 단계

- 서비스안내
- 서비스신청
- 배우자동의
- 지원결정통지서
 - 통지서출력요청
 - 서비스신청내역

통지서 출력요청



설 명

신청처리내역 조회

- **처리상태가 완료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요청이 가능합니다.
- 또한, **가장 최근의 자료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난임부부시술비지원

04 지원결정통지서 출력[2/2]

서비스신청내역을 통하여 **지원결정통지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처리 단계

서비스안내

서비스신청

배우자동의

지원결정통지서

통지서출력요청

서비스신청내역

통지서 출력요청



난임부부시술비지원

05 지원결정통지서 인쇄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출력결과입니다.

동결배아 지원결정통지서



문서확인번호: 1580-8977-5264-3845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일련번호 2020020500002 발급일자 2020.02.05.

주 소	1068258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한국아파트 101동 101호		연락처	(자택) -- (휴대폰) 010-1234-5678	
성 명	부 인	권혁일	생년월일	74.08.03.	혼인관계 ☑ 법률혼 ☐ 사실혼
	남 편	홍길동	생년월일	79.05.03.	
시술종류 및 지원한도액	신 선 (☐ 기본대상 110만원 ☐ 확대대상 90만원)			지원회차	(1) 차
	동 결 (☑ 기본대상 50만원 ☐ 확대대상 40만원)				
	인 공 (☐ 기본대상 30만원 ☐ 확대대상 20만원)				
	☐ 해당사항 없음(사실혼 부부로서 건강보험 급여 적용만)				
유효기간	2020년 02월 05일 ~ 2020년 05월 04일 (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3개월) ※ 유효기간내 시술을 시작하지 못할 경우 자동 효력 상실(재신청을 통해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 필요)				

위와 같이 시술을 의뢰합니다.

안양시보

<주수사항>

※ 지원 대상자

①지원대상자는 본적지으로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최초 진료일에 "지원 결정통지서 를 미리 제출하셔야 정부지원 난임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②시술비는 1회 시술의 지원 한도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일부 전부)의 50%, 비급여(자상유도제, 유산방지제 각 20만원 및 배아동결의 30만원 한도)에 대하여 지원이 됩니다.

③지원대상자가 희망하는 시술지정기관에서 자궁경계 시술을 받고,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시술을 시작(이하 유효기간)하여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반드시 새로운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기관에 제제출하여야 시술비가 지원이 됩니다.

④ 시술을 중단하거나 시술도중 시술기간을 변경할 경우는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한 보건소에 알리야 합니다.(시술이 신청 시 각 시술기관의 시술확인서 및 영수증을 각각 첨부)

⑤시술 의료기관이 아닌 인근 의료기관에서 프로게스테론 주사제를 투약하려는 경우,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투약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내 및 투약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지정 의료기관

①시술지정기관은 모든 시술대상자에 대하여 본 결정통지서 제출 이전 시술내용에 대하여는 정부 지원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안내 후 시술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② 본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이 경과한 지원대상자에게는 난임시술을 실시했다라도 정부지원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③부작용 등 경증 및 중등증 이상의 후유증 등은 건강보험 적용항목이므로 정부지원시술비에 포함시키거나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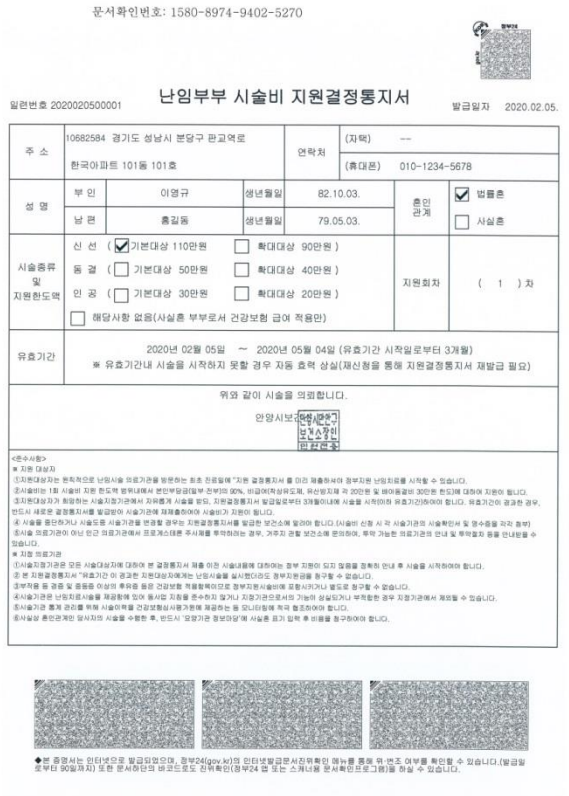
④시술기관은 난임치료시술을 제공함에 있어 동시술 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거나 부적합한 경우 지정기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⑤시술기관 통계 관리를 위해 시술이력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등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⑥시술상 혼인관계인 당사자의 시술을 수행한 후, 반드시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시술종 료기 입력 후 비용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정부24(gov.kr)의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선배아 지원결정통지서



문서확인번호: 1580-8974-9402-5270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일련번호 2020020500001 발급일자 2020.02.05.

주 소	1068258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한국아파트 101동 101호		연락처	(자택) -- (휴대폰) 010-1234-5678	
성 명	부 인	이영규	생년월일	82.10.03.	혼인관계 ☑ 법률혼 ☐ 사실혼
	남 편	홍길동	생년월일	79.05.03.	
시술종류 및 지원한도액	신 선 (☑ 기본대상 110만원 ☐ 확대대상 90만원)			지원회차	(1) 차
	동 결 (☐ 기본대상 50만원 ☐ 확대대상 40만원)				
	인 공 (☐ 기본대상 30만원 ☐ 확대대상 20만원)				
	☐ 해당사항 없음(사실혼 부부로서 건강보험 급여 적용만)				
유효기간	2020년 02월 05일 ~ 2020년 05월 04일 (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3개월) ※ 유효기간내 시술을 시작하지 못할 경우 자동 효력 상실(재신청을 통해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 필요)				

위와 같이 시술을 의뢰합니다.

안양시보

<주수사항>

※ 지원 대상자

①지원대상자는 본적지으로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최초 진료일에 "지원 결정통지서 를 미리 제출하셔야 정부지원 난임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②시술비는 1회 시술의 지원 한도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일부 전부)의 50%, 비급여(자상유도제, 유산방지제 각 20만원 및 배아동결의 30만원 한도)에 대하여 지원이 됩니다.

③지원대상자가 희망하는 시술지정기관에서 자궁경계 시술을 받고,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시술을 시작(이하 유효기간)하여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반드시 새로운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기관에 제제출하여야 시술비가 지원이 됩니다.

④ 시술을 중단하거나 시술도중 시술기간을 변경할 경우는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한 보건소에 알리야 합니다.(시술이 신청 시 각 시술기관의 시술확인서 및 영수증을 각각 첨부)

⑤시술 의료기관이 아닌 인근 의료기관에서 프로게스테론 주사제를 투약하려는 경우,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투약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내 및 투약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지정 의료기관

①시술지정기관은 모든 시술대상자에 대하여 본 결정통지서 제출 이전 시술내용에 대하여는 정부 지원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안내 후 시술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② 본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이 경과한 지원대상자에게는 난임시술을 실시했다라도 정부지원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③부작용 등 경증 및 중등증 이상의 후유증 등은 건강보험 적용항목이므로 정부지원시술비에 포함시키거나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④시술기관은 난임치료시술을 제공함에 있어 동시술 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거나 부적합한 경우 지정기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⑤시술기관 통계 관리를 위해 시술이력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등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⑥시술상 혼인관계인 당사자의 시술을 수행한 후, 반드시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시술종 료기 입력 후 비용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정부24(gov.kr)의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